

제 호

자동차 [] 연료
[]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
[] 촉매제

1. 기 관 명 :
2. 성명(대표자) : (생년월일 :)
3. 주 소 :
4. 사업장 소재지 :
5. 실험실 소재지 :
6. 검사대상
- [] 휘발유·경유 [] LPG [] 바이오디젤 [] 천연가스·바이오가스
- [] 휘발유용·경유용 첨가제 ([] 연료제조기준 [] 유해중금속 [] 배출가스)
- [] LPG용 첨가제
- [] 자동차촉매제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
[] 연료·[] 첨가제·[]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